구리 인창 대원 칸타빌 입주자 모집공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구리 인창 대원 칸타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홈페이지(guri-cantavil.co.kr)를 통한 분양안내로 대체하여 운영되며, 질병관리본부 방역관리지침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접수는 방문 및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서류 미접수 시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 서류접수의 방문 및 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접수 시, 빠른 등기로 접수를 하셔야 하며 2020년 08월 19일 도착 분까지 접수됩니다.(등기영수증은 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가능 날짜(동별 구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 공급계약으로 인해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본인 1인만 가능합니다.(동반자 동행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구리 인창 대원 칸타빌은 분양 상담전화 (☎031-556-670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많은 상담전화와 청약 신청자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상항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0년 04월 17일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0년 07월 24일이며, 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주택건설지역(경기도 구리시)은「주택법」제63조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국토교통부 공고)(2020.06.19.)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이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 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적용기간
- 분양가상한제 주택(제1항제3호),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당첨일로부터 10년간(신설 '20.4.17이후 모집승인 신청분 부터)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구리시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과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 사유로 형제자매 부양하는 경우)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년 07월 24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구리시에 2년 이상[2018년 07월 24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외국거주기간 제외)] 거주한 청약자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구리시 2년 미만 거주한 청약자보다 우선하며,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구리시 2년 미만 거주한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리시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 거주의 이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따른 우선공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 제7호에 따라「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6항 따른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대한민국 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봅니다.)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으며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며 조건 충족 시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가점제(공급세대수의 100%)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의3, 제2조 제4호에 따른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제2의3호.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지역별 청약예치금을 충족할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85㎡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단,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7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따라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7의3에 따라 "소형, 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분양권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따라 제1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의미합니다. 단,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특별공급 청약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할 경우에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합니다.)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2018년 05월 04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8년 05월 04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7년 09월 20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따라 본 아파트에 가점제에 의한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8년 07월 24일 이후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7년 12월 1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아래 3가지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
2.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
3.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

-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guri-cantavil.co.kr)에 공개(개별조회방식)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9년 12월 6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어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년 05월 04일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6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는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사업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분양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유의사항

- 해당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구리시는 투기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유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자기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는 확장형 기준 59B, 74, 84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CG와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세대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별 청약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셔야 합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당해, 기타)				
일 정	08월 04일(화)	08월 05일(수) ~ 06일(목)	08월 07일(금)	08월 14일(금)	08월 15일(토) ~ 08월 19일(수)	08월 25일(화) ~ 08일 27일(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8 : 00 ~ 17 : 30)			개별 조회 (청약홈 조회 가능)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10 : 00 ~ 16 : 00)	견본주택 방문접수 (10 : 00 ~ 16 : 00)
장 소	- 인터넷 청약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인터넷 청약 :한국감정원 청약홈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 '청약홈' 검색 후 이용 가능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13-2)	

* 고령자, 장애인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 ~ 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구리시청 건축과 – 30977호(2020년 07월 23일)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38-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5층(5개동) 총 375세대 [특별공급 162세대(기관추천 38세대, 다자녀가구 38세대, 신혼부부 75세대, 노부모부양 1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 : 2023년 02월 예정이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 번호	타입	주택형 (전용 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 면적 (지하 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총공급 세대 수	특별공급 세대 수					일반 분양 세대 수	최하층 우선 배점 세대 수
					주거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0000888	1	59.93A	59A	59.9327	19.2167	79.1494	44.2413	123.3907	33.7895	94	10	-	19	3	32	62	-
		2	59.42B	59B	59.4251	20.0866	79.5117	43.8665	123.3782	33.5033	45	5	-	9	-	14	31	2
		3	74.91	74	74.9182	24.6782	99.5964	55.3034	154.8998	42.2382	81	8	19	16	3	46	35	2
		4	84.97	84	84.9707	27.0195	111.9902	62.7240	174.7142	47.9057	155	15	19	31	5	70	85	5
	합계										375	38	38	75	11	162	213	9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사이버모델하우스(guri-cantavil.co.kr)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공급세대수	동(라인)	층 구분	해당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 (60%)						잔금(30%)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2020.12.18	2021.04.19	2021.09.20	2022.02.18	2022.06.20	2022.10.18	입주 지정일
59A	94	104동 · 105동	2층	2	163,905,000	242,595,000	406,500,000	40,650,000	40,650,000	40,650,000	40,650,000	40,650,000	40,650,000	40,650,000	121,950,000
			3층	4	163,905,000	250,995,000	414,900,000	41,490,000	41,490,000	41,490,000	41,490,000	41,490,000	41,490,000	41,490,000	124,470,000
			4 ~ 10층	28	163,905,000	267,995,000	431,900,000	43,190,000	43,190,000	43,190,000	43,190,000	43,190,000	43,190,000	43,190,000	129,570,000
			11층 이상	60	163,905,000	272,195,000	436,100,000	43,610,000	43,610,000	43,610,000	43,610,000	43,610,000	43,610,000	43,610,000	130,830,000
59B	45	104동 · 105동	1층	2	164,655,200	235,144,800	399,800,000	39,980,000	39,980,000	39,980,000	39,980,000	39,980,000	39,980,000	39,980,000	119,940,000
			2층	2	164,655,200	243,644,800	408,300,000	40,830,000	40,830,000	40,830,000	40,830,000	40,830,000	40,830,000	40,830,000	122,490,000
			3층	2	164,655,200	252,144,800	416,800,000	41,680,000	41,680,000	41,680,000	41,680,000	41,680,000	41,680,000	41,680,000	125,040,000
			4 ~ 10층	14	164,655,200	269,244,800	433,900,000	43,390,000	43,390,000	43,390,000	43,390,000	43,390,000	43,390,000	43,390,000	130,170,000
			11층 이상	25	164,655,200	273,444,800	438,100,000	43,810,000	43,810,000	43,810,000	43,810,000	43,810,000	43,810,000	43,810,000	131,430,000
74	81	102동	1층	2	206,247,200	283,852,800	490,100,000	49,010,000	49,010,000	49,010,000	49,010,000	49,010,000	49,010,000	49,010,000	147,030,000
			2층	3	206,247,200	294,552,800	500,800,000	50,080,000	50,080,000	50,080,000	50,080,000	50,080,000	50,080,000	50,080,000	150,240,000
			3층	4	206,247,200	305,252,800	511,500,000	51,150,000	51,150,000	51,150,000	51,150,000	51,150,000	51,150,000	51,150,000	153,450,000
			4 ~ 10층	28	206,247,200	326,552,800	532,800,000	53,280,000	53,280,000	53,280,000	53,280,000	53,280,000	53,280,000	53,280,000	159,840,000
			11층 이상	44	206,247,200	331,852,800	538,100,000	53,810,000	53,810,000	53,810,000	53,810,000	53,810,000	53,810,000	53,810,000	161,430,000
84	155	101동 · 103동	1층	5	231,912,700	307,187,300	539,100,000	53,910,000	53,910,000	53,910,000	53,910,000	53,910,000	53,910,000	53,910,000	161,730,000
			2층	6	231,912,700	319,187,300	551,100,000	55,110,000	55,110,000	55,110,000	55,110,000	55,110,000	55,110,000	55,110,000	165,330,000
			3층	8	231,912,700	331,187,300	563,100,000	56,310,000	56,310,000	56,310,000	56,310,000	56,310,000	56,310,000	56,310,000	168,930,000
			4 ~ 10층	56	231,912,700	355,187,300	587,100,000	58,710,000	58,710,000	58,710,000	58,710,000	58,710,000	58,710,000	58,710,000	176,130,000
			11층 이상	80	231,912,700	373,187,300	605,100,000	60,510,000	60,510,000	60,510,000	60,510,000	60,510,000	60,510,000	60,510,000	181,530,000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주거전용면적 및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가격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 공용 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고,

각각의 반올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상가 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면적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청약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따라 해약 조치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자는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중도금이자 후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당 사업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 수

구분			59A	59B	74	84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서울특별시	1	1	1	2
		인천광역시	1	1	1	2
		경기도	3	1	2	3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외	1	1	1	1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1	1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	-	1	3
	중소기업 근로자		2	1	1	3
	계		10	5	8	15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14	7	12	23
		일반공급(25%)	5	2	4	8
		계	19	9	16	3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지역기준	경기도 및 구리시(50%)	-	-	10	10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50%)]	-	-	9	9
		계	-	-	19	1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구리시 거주자 우선공급		3	-	3	5
합계			32	14	46	7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 수는 공급세대 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년 05월 04일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합니다.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으로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이 제한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table>
<tr><td></td><td>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td></tr>
<tr><td>청약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지역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분</th><th>서울특별시</th><th>인천광역시</th><th>경기도</th></tr>
<tr><td>전용면적 85㎡</td><td>3,000,000원</td><td>2,500,000원</td><td>2,000,000원</td></tr>
<tr><td>전용면적 102㎡</td><td>6,000,000원</td><td>4,000,000원</td><td>3,000,000원</td></tr>
<tr><td>전용면적 135㎡</td><td>10,000,000원</td><td>7,000,000원</td><td>4,000,000원</td></tr>
<tr><td>모든 면적</td><td>15,000,000원</td><td>10,000,000원</td><td>5,000,000원</td></tr>
</table>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td></tr>
</table>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8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철거민 제외 - 장애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거주자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추천기관 - 장애인 : 경기도청,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경기북부보훈지청 대부의료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 별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처리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년 12월 11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원으로서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임신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출산은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양자 및 친양자)은 입양관계증명서의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년 12월 11일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원으로서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구리시 2년 이상 거주자 우선)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 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구리시 2년 이상 거주자 우선)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단,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입양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임신, 입양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제3항) - 이혼자녀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혼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및 구리시에 우선공급하며,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포함)에 50%를 공급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되, 경기도의 경우 구리시 2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기타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경기도 거주자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미달이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경기도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영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구리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점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합니다.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처리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별표 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계	100	기준	점수	
미성년자녀수(1)	40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한다.
		4명	35	
		3명	30	
영유아자녀수(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된다.)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된다.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지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한다.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봅니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합니다.)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적용

(4), (5) :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상위공급 (기준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30% 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434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20% ~ 130% 이하일 경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성년(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 대상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
(4)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소득)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1.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1. 해당 직장 2. 해당 직장 / 세무서

	신규 취업자	1. 재직증명서 2.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1. 해당 직장 2.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세무서
	법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2. 법인등기부등본	1. 세무서 2.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증명 제출	1.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1.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국민연금관리공단 2.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 판매원		1.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2.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해당 직장 / 세무서 2.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2. 1번이 없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1. 해당 직장 2.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1. 비사업자 확인각서(2019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장소 비치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사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에 관한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 동·호수 선정	•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 당첨 사실이 있는 자 등의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 내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해당 세대수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50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유의사항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가능 (단,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12.11)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신혼 기간 내 주택 소유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 시 2순위 해당) • 특별공급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만 65세 이상 신청자에 한해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 한 경우만 방문접수(견본주택) 가능합니다. • 인터넷청약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특별공급 당첨자 구비서류 참조) • 방문접수(견본주택) 접수 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 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다 무효 처리합니다.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예비대상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 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 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공급신청자의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년 07월 24일] 현재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및 외국인 포함] •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구리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구리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19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구리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인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청약홈(www.applyhome.co.kr) 과거당첨 사실조회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 내에 해당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충족 기준 : 청약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증액기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주택규모(전용면적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청약신청하려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의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의 경과(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당해지역 전입일 관련기준 : 1순위 당해 지역거주자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구리시에서 2년 이상(2018.07.24.이전부터 계속 거주)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불가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 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 구분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면적 85㎡ 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 추첨제 선택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가점제 100%) -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비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속한 자 ※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

	1. 해당주택건설지역 - 구리시 (구리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2. 기타지역 - 수도권 [1. 구리시 2년 미만 2. 서울특별시 3. 인천광역시 4. 경기도]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비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 저축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 기준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로 청약 가능) -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2]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상기 1순위자로서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2순위 청약도 불가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3,000,000원	2,500,000원	2,000,000원
전용면적 102㎡	6,000,000원	4,000,000원	3,000,000원
전용면적 135㎡	10,000,000원	7,000,000원	4,000,000원
모든 면적	15,000,000원	10,000,000원	5,000,000원

※ 청약통장 가입자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납부한 예치금이 별표2(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른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충족한 경우,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6년 12월 30일)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2호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확인할 서류 등</th></tr>
<tr><td rowspan="9">(1) 무주택기간</td><td rowspan="9">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d rowspan="9">-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한다.
* 만 30세가 되기 전 혼인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 있는 경우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td></tr>
<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
<tr><td rowspan="4">(2) 부양
가족 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d rowspan="4">- 주민등록표 초·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td></tr>
<tr><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
<tr><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
<tr><td>3명</td><td>20</td><td>-</td><td>-</td></tr>
<tr><td rowspan="10">(3)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10"></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d rowspan="10">-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td></tr>
<tr><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11년 미만</td><td>1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td><td>-</td></tr>
<tr><td>총점</td><td>84</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7">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직계존속(만6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td></tr>
</table>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3조,(별표 1의 1)]

구분	신청자격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주택 또는 분양권 등이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

	세대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이하 '소형·저가주택 등'이라 한다.)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해당 주택형의 청약경쟁이 있었으나 계약이 되지 아니한 미계약 물량은 제외한다.)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소유한 사실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공급신청자 : 공급신청자 본인은 부양 가족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3)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 여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한다.) 4)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배우자도 세대주여야 합니다.)인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나)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가 적용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5)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된다.) 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미혼의 자녀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본다) 나) 단, 만 30세 이상인 주택공급신청자의 미혼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 만 30세 미만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 만 30세 이상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 (2)에 다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다만, (2)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 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Ⅳ. 청약신청 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정 및 장소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신청대상자</th><th>신청일시</th><th>신청 방법</th><th>신청 장소</th></tr>
<tr><td>특별공급</td><td colspan="3">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td><td>2020.08.04.(화)
청약홈 인터넷 : 08 : 00 ~ 17 : 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 : 00 ~ 14 : 00</td><td>•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td><td>• 한국감정원 '청약홈'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견본주택</td></tr>
<tr><td rowspan="3">일반공급</td><td rowspan="2">1순위</td><td>해당지역</td><td>구리시 2년 이상 거주</td><td>2020.08.05.(수)
청약홈 인터넷 : 08 : 00 ~ 17:30</td><td rowspan="3">•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td><td rowspan="3">• 한국감정원 '청약홈'홈페이지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td></tr>
<tr><td>기타지역</td><td>구리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td><td>2020.08.06.(목)
청약홈 인터넷 : 08 : 00 ~ 17 : 30</td></tr>
<tr><td>2순위</td><td colspan="2">수도권 거주자</td><td>2020.08.07.(금)
청약홈 인터넷 : 08 : 00 ~ 17 : 30</td></tr>
</table>

※ 1순위 청약 일정분리에 따른 청약 시 유의사항

- 구리시 2년 이상 거주자는 해당지역(구리시)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위반 시 부적격 처리)
- 구리시 2년 미만 거주자는 기타지역 접수일에 기타지역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해당지역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 : 00~14 : 00)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신청 시 접수된 서류를 계약 시 구비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니, 계약 시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 : 00 ~ 16 : 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에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표2] 특별공급 구비서류(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제출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주택서약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를 통한 대리 신청 불가)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거주기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출생일부터 모집공고일가지 발급)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제외]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한 경우 생략
		O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O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합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 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입증받기 위한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19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만18세의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임신증명서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상세'로 발급
		O	기본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임신증명서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확인 각서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O		소득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1] 참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미만 공급신청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여부 판단 및 직계존속 부양가족 판단 시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녀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중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O		인감도장	본인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O		위임장	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한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APT청약신청」⇒「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청약신청 시 행정정보 자동조회 없이도 모든 청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므로 외부 요인(접속자 과다로 인한 정부24 장애 등)에 따라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 행정정보 자동조회를 신청하지 말고 청약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 ②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 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 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자격 사전관리」⇒「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 : 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 : 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 : 00 ~ 16 : 00)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 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접수 마감 시간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이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 당첨자 발표 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일시 : 2020년 08월 14일(금)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홈(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8.14.(금) ~ 2020.08.23.(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 일시	2020.08.14.(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에는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주택형별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리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구리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구리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신청자는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예비입주자 비율 500%를 포함)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따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에는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홈)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홈)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특별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같은 주택형의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VI.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기한	• 2020.08.15(토) ~ 2020.08.19(수) [5일간, 10:00 ~16:00까지(우편 접수 경우 도착분에 한함)) •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포함 전원
제출방법	• 구리 인창 대원 칸타빌 견본주택 방문제출 및 우편(등기)제출
제출처	• 구리 인창 대원 칸타빌 견본주택(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13-2)
유의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류 제출 방법은 방문 제출이 아닌 우편(등기)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 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 청약한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표2]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소득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거주기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O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가점제 당첨자 및 가점제 당첨 예비 입주자		O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미만 공급신청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여부 판단 및 직계존속 부양가족 판단 시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녀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중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O		인감도장	본인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O		위임장	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자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0.08.25.(화) ~ 2020.08.27.(목) (3일간 10 : 00 ~ 16 : 00까지)	구리 인창 대원 칸타빌 견본주택(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13-2)

▣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301-0275-8521-51**	㈜대원건설, ㈜대원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플러스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 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O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O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계약용으로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 계약 시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O		위임장	본인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신분증, 인장	대리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계약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를 수분양자가 신고관청(구리시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청약 관련 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초 분양계약자가 기존주택 처분서약 미이행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분양계약이 취소될 경우 명의변경을 통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체 등에게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 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큰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동조동항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및 "분양권 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7의2,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부칙 제3조
①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②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처분 기준일(아래의 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④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⑤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자로 봅니다.)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60세 이상의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⑨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일반공급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자로 봅니다.)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합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출취급기관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출 불

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중도금 납일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후불제로 사업주체가 일정 비율에 한해 선납하며,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대납했던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대출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를 비롯한 사업관계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담보대출 전환 시 대출한도, 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Ⅶ. 추가 선택품목

▣ 기본 선택 품목 ※ 발코니 확장 선택 세대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택형	선택 품목	선택품목
74, 84 타입	알파룸	침실형
		복합형
전 주택형	강마루	리치그레이
		네이쳐오크

- 알파룸 침실형 선택 시 일반침실 등기구가 시공됩니다.
- 알파룸 기본선택품목 미선택 시 복합형으로 시공됩니다.
- 기본선택 품목 선택 시 가변벽체는 경량으로 시공되며 기타 마감재(벽지, 몰딩, 배선기구 등)시공부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① 발코니 확장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주택형)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59A	9,330,000	933,000	8,397,000
59B	9,380,000	938,000	8,442,000
74	11,440,000	1,144,000	10,296,000
84	12,870,000	1,287,000	11,583,000

②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및 잔금)	농협은행	**301-0275-8590-31**	㈜대원건설, ㈜대원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플러스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상기 확장비용은 외부발코니 새시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확장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따른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합니다.), 제거 등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견본주택을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시공상 하자로 인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단, 결로 발생이 고객의 귀책인 경우, 시공자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 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및 일부 벽체의 돌출, 인접세대의 소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 비용은 분양가와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확장 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공개된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건축법 시행령」및「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견본주택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옵션) ※ 발코니 확장 선택 세대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① 플러스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선택 품목	설치위치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중문	현관	59A	700,000	70,000	630,000	
		59B	700,000	70,000	630,000	
		74	700,000	70,000	630,000	
		84	700,000	70,000	630,000	
책상, 수납장	침실 1	59A	900,000	90,000	810,000	
		59B	900,000	90,000	810,000	
		74	1,300,000	130,000	1,170,000	
		84	1,450,000	145,000	1,305,000	
헤링본 마루	바닥재	59A	1,150,000	115,000	1,035,000	
		59B	1,150,000	115,000	1,035,000	
		74	1,400,000	140,000	1,260,000	
		84	1,500,000	150,000	1,350,000	
슬라이딩도어 A	침실 2	74	1,400,000	140,000	1,260,000	
		84	1,450,000	145,000	1,305,000	
슬라이딩도어 B	알파룸	74	450,000	45,000	405,000	
		84	460,000	46,000	414,000	

• 현관중문 선택에 따라 주택형별 현관신발장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책상, 수납장 옵션 선택 시 기본 붙박이장은 미설치되며 배선기구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헤링본 마루의 색상은 기본선택품목 중 강마루 선택 색상에 따라 변경됩니다.
• 슬라이딩도어B의 경우 기본선택품목 중 알파룸을 복합형으로 선택할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은 용도에 맞게 선택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공급 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②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 및 잔금)	농협은행	**301-0275-8590-31**	㈜대원건설, ㈜대원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 옵션 선택 품목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① 시스템 에어**컨 ※ 발코니 확장 선택 세대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 품목			설치장소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59A, 59B	일반형	선택1	2대	거실/주방 + 안방	삼성전자	3,200,000	320,000	2,880,000	
		선택2	4대	거실/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5,600,000	560,000	5,040,000	
	공기청정형	선택1	2대	거실/주방 + 안방	삼성전자	3,600,000	360,000	3,240,000	
		선택2	4대	거실/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6,500,000	650,000	5,850,000	
74	일반형	선택1	2대	거실/주방 + 안방	삼성전자	3,300,000	330,000	2,970,000	
		선택2	4대	거실/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5,950,000	595,000	5,355,000	
		선택3	5대	거실/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6,800,000	680,000	6,120,000	
	공기청정형	선택1	2대	거실/주방 + 안방	삼성전자	3,800,000	380,000	3,420,000	
		선택2	4대	거실/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6,900,000	690,000	6,210,000	
		선택3	5대	거실/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7,800,000	780,000	7,020,000	
84	일반형	선택1	2대	거실/주방 + 안방	삼성전자	3,300,000	330,000	2,970,000	
		선택2	4대	거실/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6,100,000	610,000	5,490,000	
		선택3	5대	거실/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7,000,000	700,000	6,300,000	
	공기청정형	선택1	2대	거실/주방 + 안방	삼성전자	3,800,000	380,000	3,420,000	
		선택2	4대	거실/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7,050,000	705,000	6,345,000	
		선택3	5대	거실/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8,000,000	800,000	7,200,000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선택 시 별도의 냉매배관으로 시공,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실내기 설치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가동 시 발생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에어컨 수량 및 냉방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침실형 / 복합형 알파룸 모두 동일한 실내기가 설치되며 실내기 설치로 인해 등기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세대는 미선택 시 기본 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거실, 안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급 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② 가전 옵션 선택 품목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 품목		모델명	제조사	공급가격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59A, 59B	비스포크 냉장고(4도어) + 김치냉장고	스타일 A	RF61R91C3AP+RQ33R7422AP	삼성전자	5,190,000	519,000	4,671,000	새틴그레이+글램핑크+글램올리브+코타화이트
		스타일 B			5,120,000	512,000	4,608,000	글램네이비+새틴그레이+코타화이트
		스타일 C			5,110,000	511,000	4,599,000	코타화이트+새틴그레이
74, 84	비스포크 냉장고(4도어) + 김치냉장고	스타일 A	RF61R91C3AP+RQ33R7422AP	삼성전자	5,320,000	532,000	4,788,000	새틴그레이+글램핑크+글램올리브+코타화이트
		스타일 B			5,250,000	525,000	4,725,000	글램네이비+새틴그레이+코타화이트
		스타일 C			5,240,000	524,000	4,716,000	코타화이트+새틴그레이
전 타입	하이브리드쿡탑(3구)		CIR - S3216FLBS	쿠첸	500,000	50,000	450,000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전 타입	인덕션쿡탑(3구)		CIR - IH303DSBI		650,000	65,000	585,000	인덕션3구

• 비스포크 냉장고 설치 시 맞춤형 수납장이 추가로 시공되며 미선택 시는 일반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공간이 제공됩니다.
• 일반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설치 시 앞으로 돌출될 수 있으며 후면은 벽지마감입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 인덕션 옵션 선택 시 가스쿡탑은 미설치 됩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 인덕션 옵션 선택 시 가스식 차단장치(천장가스누설경보기 포함)는 전기식 차단장치로 변경 시공됩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 인덕션 옵션 선택 시 월패드 및 스마트 일괄스위치의 가스차단기능은 전기차단기능으로 변경됩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주방가전옵션은 전 주택형이 선택 가능합니다.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전 옵션 상품 공급 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③ 가전 옵션 선택 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시스템 에어컨 및 가전 선택 품목	농협은행	**301-0275-8590-31**	㈜대원건설, ㈜대원

• 가전 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납부주체가 당첨자(계약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① 공통

-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②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문	목재문, 플라스틱문(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 도어레버, 경첩 등), 디지털도어록	각실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실외기실 방문**, 실외기 루버
바닥재	강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디딤판, 발코니 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재료분리대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초배지 포함), 벽체마감(타일), 발코니 수전	석고보드마감, 단열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발코니벽 도장, GAS배관
천장	천장지(초배지 포함), 등박스(우물천장 포함), 반자돌림(몰딩 포함), 전등빨래건조대	천장틀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장 도장, 소방시설,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절수페달 포함), 액세사리, 천장재(천장틀 포함), 재료분리대, 젠다이,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훼, 욕실바닥 및 벽타일, 배수구 커버	조적, 방수, 미장, 전기, 설비, 배관/배선
주방가구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사리 포함), 벽타일, 수전류, 주방가전 일체(가스쿡탑, 음식물탈수기, 렌지후드, 광파오븐, 주방액정TV 등)	소방검사 관련 자동식 소화기 및 주방소화기 및 주방 배기덕트
일반가구	신발장, 복도장, 드레스룸장(도어 및 시스템 선반 포함), 파우더(화장대, 상판 및 거울포함)장, 반침장, 수납선반 및 기구(액세서리 포함)	-
조명기구	부착형,노출형 조명등기구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매입등기구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③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59A	59B	74	84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 금액)	21,000,000	21,000,000	25,000,000	28,000,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④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및 별도계약 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합니다.(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 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므로 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건축법」제52조,「건축법 시행령」제61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6조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변식의 칸막이 제거(변경)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방기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따라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 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Ⅷ.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 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월 : 2023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실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경비실, 근린생화시설 등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는「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구분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등
건축부문 설계기준	단열조치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의 단열재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	적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제7조제2항에 의한 '열원설비'에 만족하는 보일러 반영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준수 (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 제외)
	고효율 난방·급탕·급수펌프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또는 평균효율이 KS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 준수
	절수형설비 설치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절수형 설비 반영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실별 난방온도 조절장치 반영
전기부문 설계기준	수변전 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 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녹색건축 예비 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그린4 등급	-	**1등급**

• 50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82020-101-0007100	136,587,22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내용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제1항1호 가목에 따라 주 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자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칩니다.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줌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 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 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 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충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 받는 경우에는 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 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내용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상호	㈜태원종합기술단	㈜케이제이엔지니어링	(주)나로이엔씨
금액	1,039,223,900	430,329,000	242,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공사	시행사
상호	㈜대원, ㈜대원건설	㈜대원, ㈜대원건설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5번길 15(송정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5번길 15(송정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5번길 15(송정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5번길 15(송정동)
등록번호	150111-0003058 150111-0007092	150111-0003058 150111-0007092

IX. 유의사항

▣ 유의사항

• 견본주택 미건립 주택형에 대해서 계약을 하실 경우 카탈로그 또는 이미지는 실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이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이면서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화디자인 계획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시행 2020. 2.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12호, 2020. 2. 20. 일부개정]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어린이집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 입주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한다.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을 결정한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하향식 피난 사다리'를 통하여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니, 계약시 필히 확인하시고 탈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그 위치는 점검 편의 등을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천장 마감이 변경될 경우, 동급 이상의 마감자재로 설치됩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소방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 후 입주자의 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으로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분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은 준공도서에 따릅니다.
- 커뮤니티시설 내 가구 및 운동기구의 수량 및 배치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타 집기류는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에어컨 실외기, 쓰레기 분리수거함, DA 등)의 설치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주변 도로 등은 현재 상황 또는 설치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별도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관련 사항

- 견본주택에는 59B, 74, 84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본 공사 시에도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또한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동선의 개선 및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준공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며 세대 시공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관련 주요 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 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공통	일반사항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예정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 각종 홍보물은 2020년 06월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사업계획승인일(2019년 12월 10일) 기준으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주택법」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 단지 맞은편에 인창1로가 있고, 남측에는 동구릉로, 북측에는 북부간선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본 아파트 인근에는 근린공원, 상업시설 등이 위치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 어린이공원 및 북측 소공원, 진입도로는 사업부지 일부 기부채납 예정이며,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의 버스정류소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 인창1로 연결구간에는 가속차선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완충녹지의 형상 및 면적, 폭 등이 변경되어 단지 및 세대의 소음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업지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 평가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의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 및 심의 등에 따라 설치되는 단지주변 교통시설물(신호등, 교차로, 버스정류장, CCTV 등)에 대하여 시설물 위치 이전 및 추가설치 등을 당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 내·외부 일부구간에 조경석 또는 옹벽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높이, 옹벽디자인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상 상위계획 및 최종측량성과도에 따라 도로폭,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마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도로변에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인접동 저층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가 제한 될 수 있으며, 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사양, 형태 등에 대하여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및 개발계획변경 등에 따라 각 동 및 층별 일조권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공원계획 및 녹지계획 등은 관련기관의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하며, 견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으로 경의중앙선과 인접하여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동측 일부부지(원영운수)는 단지 외 부지로서, 해당 부지의 용도 및 향후 공사일정 등에 대한 사항은 무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서측 인창2로에 조성될 보행 인도는 단지 내에 속한 부지이나, 사업승인조건 상 인근지역주민과 공용으로 사용되도록 조성된 인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 단지 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4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규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군, 신설학교 설립 예정부지는 구리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구리 인창 대원 칸타빌(375세대)으로 발생되는 초·중·고등학생은 구리시 기존 학교 및 신설 예정 고등학교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설립 여부, 학급당 학생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관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동별 현황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103동 측면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제원에 따라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대수 및 속도, 인승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내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이격거리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는 각 동의 필로티 하부 및 옥외자전거 보관소에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동의 필로티 위치와 면적에 따라 설치 대수는 각 동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 (설계·디자인·마감)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관련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102,103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됩니다.) • 옥상층 또는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방공호 및 대공포진지 군사시설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로 진입하는 차량통제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 옥상에는 5G 이동통신용 옥외 안테나와 중계장치가 설치되며 지하주차장 일부 휀룸 및 제연휀룸, 방재실에 5G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됩니다.

		• 5G 이동통신 안테나,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는 단지여건, 신호강도,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되거나 증설될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 시 입주자 및 방문자의 차량출입을 위한 차로가 별도로 구분되어 구획되어 있지 않으며, 방문자의 출입 시 차량출입을 위해 대기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주출입구 및 외부 차량램프 등의 도로에서 단지로 출입하는 구간에는 단지의 조성레벨 따라 완만한 경사를 통해 진입할 수 있으며, 해당 경사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차량불빛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외관계획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입면패턴, 마감재, 장식물, 옥상 구조물 등), 조경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옹벽 및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의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 및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뿜칠, 페인트로 마감되며, 주동형태에 따라 석재와 뿜칠, 페인트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 진입부에는 문주가 설치되며 주 진입부에 위치한 주동의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문주설치로 인한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일부 동 측벽에는 금속마감 및 조명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 특화 및 마감계획은 인·허가 및 현장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4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되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 지하수유출에 따른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저수조와 빗물 재활용을 위해 빗물저류조가 설치되어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102동 필로티, 104동 필로티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간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정화조가 설치되며, 정화조의 통기관은 105동 옥상에 설치됩니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입니다.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총 453대(경차 및 장애인주차, 전기충전 주차면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옥내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완속 3개소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지하 1층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약 2.7m로 부위별로 상이하며, 설비 등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로 높이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소형 택배차의 통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계단은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1개소입니다 •「주택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단위세대	평면	• 주택형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의 설치위치는 확장형기준으로 59A형, 59B형은 실외기실이고, 74형, 84형은 다용도실에 설치됩니다. • 74형,84형 다용도실의 경우, 전열교환기 설치 및 천장 마감재 시공으로 인해 천장 높이가 2,150mm로 시공됩니다. 이에 세탁+건조기 일체형 설치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 등 유사 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 • 4층 이상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로서,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될 수 있고,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설치를 위해 벽면이 돌출될 수 있습니다.
	창호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됩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계단실의 프로젝트 창의 적용위치는 층별, 동별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층에서는 고정창, 일부 층에서는 프로젝트 창으로 시공 될 수 있습니다.
	가구 및 마감재	•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타일 나누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현관 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전기기계설비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품목인 시스템에어컨 미설치 시,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미건립 된 세대에 대한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종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주택형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연출용 조명등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 시공도니 내부 조명이 어둡게 느껴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주택형 59A 주택형은 건립되어 있는 59B 주택형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되며, 옵션은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각 타입별로, 아파트 시공 시에 일부 세대에 선행세대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 : guri-cantavil.co.kr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13-2번지(031-556-670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본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